#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0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 · 박광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 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 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 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 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제3호의2).

법률 제 호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 중·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 3의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
지) (생략)	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7) (8 = 1)	
∠ λ] λ <del> </del> \	같음)
<u> </u>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의 자
	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
	의를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
	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
	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ㆍ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u>아니 된다.</u>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한 자와 그 상대방	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
	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
	록증을 대여한 사람

<u>&lt;신 설&gt;</u>	3의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공인노무사의 명의를 사
	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
	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
	의 사용이나 자격증ㆍ등록증
	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